

[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]

[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7월 5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5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년 7월 11일(제1차 총무위원회)
- 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18호

2. 제정이유

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- 가. 거주외국인의 지위(안 제3조)
 -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에 준하는 지위로 개념을 정립함
- 나. 지원대상(안 제5조) : 군내에 거주외국인 등
- 다. 지원범위(안 제6조) :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, 상담, 생활편의 제공 및 문화·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

라. 자문위원회 설치(안 제7조부터 제13조)

- 시책자문을 위하여 거창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둠

마.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(안 제14조)

- 외국인 지원 단체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
바. 업무의 위탁(안 제15조) :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음

사. 세계인의 날(안 제16조)

- 매년 5월 20일을 거창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, 그 날을 전후하여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며,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

아. 외국인에 대한 포상 및 명예군민(안 제17조, 제18조) :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 포상 또는 명예군민으로 예우함

4. 검토보고 요지

-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06. 11. 7. 「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」 과

「경상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」이 시달되어 후속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『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』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동조례가 시행되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

-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「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」과 「경상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」을 근간으로하여 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- 제5조(지원대상)에서 표준안에 대비하여 3호에 “국제결혼 이민자”를 신설한 것에 대하여는 그 신설사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.

-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

가. 발의자 : 총무위원회

나. 수정이유

○ 제1조(목적)에서 외국인으로 단순히 표기할 경우 제2조(정의)1호의 “외국인”과 제5조2호의 “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”와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 제1조(목적)에서 **외국인→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**으로 수정하고자 함.

다. 수정내용

원 안	수 정 안	비고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<u>외국인의</u>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<u>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</u>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<u>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</u>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<u>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</u> 목적으로 한다.</p>	

8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